



금융위원회

금융위원회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금융투자업 인가 통보

주식회사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이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인가
(2023.9.13(수), 제16차 금융위원회 의결)하였음을 통보합니다.

- 불임 1. (주)밸류시스템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 1부.
2. 집합투자업 인가증 1부(별도송부). 끝.

금융위원회위원장



수신자 금융감독원장, (주)밸류시스템자산운용 대표이사

주무관 이주연 행정사무관 김민석 자산운용과장 전결 2023.9.15.
고영호

협조자

시행 자산운용과-2722 (2023.09.15) 접수

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, 금융위원회 (세종로) / <http://www.fsc.go.kr>

전화번호 02-2100-2665 팩스번호 02-2100 / smartedition@korea.kr / 비공개(7)

함께 이겨낸 역사, 오늘 이어갑니다

(붙임)

(주)밸류시스템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

(주)밸류시스템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.

— 다 음 —

1. 상 호 : (주)밸류시스템자산운용

2. 인가업무

인가업무 단위	금융투자업의 종류	금융투자상품의 범위	투자자의 유형
3-11-1	집합투자업	증권·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	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

※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1]

3. 인가조건

가.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

- 다만,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,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,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
4. 인 가 일 : 2023. 9. 13.